
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검수서



■ 서류서류 체크사항

구분	서류유형		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	○		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	본인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단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도장 인감증명서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제3자 대리인 접수 불가) · 용도: 아파트 계약용 (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· 성명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 포함하여 '상세' 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(화성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)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1.23)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·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·비속	·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·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 포함" 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·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 로 발급
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 및 직계비속	·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 로 발급	
○	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·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	
제3자 대리인 계약시	○		위임장	청약자	· 견본주택 비치(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)
	○		계약자인감도장 계약자인감증명서	청약자	· 용도: 아파트 계약위임용 (대리 계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 * 단,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대리인 도장	대리인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서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(2020.11.23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,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' 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